

제433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27일(금)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9)
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8)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0)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3)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8)
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56)
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6)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2)
10.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4)
11.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3)
12.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6)
13.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2)
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6)
1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3)
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6)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3)
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6)
2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2)
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4)
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4)
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0)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0)
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6)
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8)
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8)
31.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2.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상정된 안건

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9) 3
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8) 3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0) ... 3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3) 3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8) 3
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56) 3
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8.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6) 3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2) 3
10.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4) ... 3
11.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3) 3
12.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6) 3
13.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3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2) 3
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6) 4
1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7.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3) 4
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6) 4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3) 4
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6) 4
2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중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2) 4
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4) 4
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4) 4

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0)	4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0)	4
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6)	4
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8)	4
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8)	4
31.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32.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17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교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한 후에 202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등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9)
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8)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0)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3)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8)
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56)
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6)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2)
10.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4)
11.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3)
12.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6)
13.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2)

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6)
1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3)
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6)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3)
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6)
2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2)
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4)
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4)
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0)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0)
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6)
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8)
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8)

(10시05분)

○위원장 김교흥 의사일정 제1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3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오경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임오경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11건의 법률안과 국가유산청 소관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을 원안의결하고 5건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문서등’의 범위에 ‘누리집의 게시물’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누리집의 게시물’을 ‘전자문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누리집의 게시물이 전자문서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규정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제개발협력 주무기관인 외교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학영·조은희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법인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법인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자세히 규정하고 거점기관을 약칭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박수현 의원과 이연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사진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우수사례 발굴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정하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지출용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하려는 것으로 법률 정합성을 위하여 보존·관리사업 대상을 명시한 숫자를 삭제하고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용 조문을 명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흥 임오경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정하 소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박정하입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3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을 원안 의결, 1건을 수정 의결하고 2건의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덕흠·조계원·김재원·진중오·임오경·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국가가 체육지도자와 직장운동경기부 사이의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지도자가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가대표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셋째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협의회 구성, 한국스포츠안전재단 설립,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사개최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체육 행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종배 의원과 박수현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두고 있는 타 입법례와 같이 개정안 조문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예외적인 조항임을 조문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미애·조계원·박수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전담여행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및 문제상황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흥 박정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오늘 제가 발의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지금 소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 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관님, 지난 21일 BTS 광화문 공연 파급효과, 경제적 효과를 어느 정도로 지금 추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경제적 효과는 지금 집계하는 곳마다 혹은 예측하는 곳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

니다.

○김승수 위원 어떤 자료에 의하면 한 2660억의 직접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문광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포함하면 1조가 넘는, 1조 2000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공연은 끝났지만 그 이후로도 광화문 또 명동 주변의 여러 가지, 상가라든지 식당 이런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그동안의 K-콘텐츠 매출이 주로 IP, 지적재산권 위주의 매출이었다고 그러면 최근 들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산업 효과들, K-푸드 또 K-관광 이런 쪽으로 지금 파급효과가 연계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경향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의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K-콘텐츠하고 관련된 또 한류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아직까지는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집중되어 있고 지역에서의 한류의 산업적인 효과 자체가 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한류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K-콘텐츠 산업 매출액 자체가 2024년 기준해서 보니까 거의 157조 원 정도 되고 수출액만 하더라도 140억 달러인데 이 부분을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 산업으로 더 육성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수도권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한류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방소멸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법 내용대로 지방에서의 한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기에는 좀 문체부 차원에서 한류산업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지원 예산들을 좀 마련해서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가지고 한류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예.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것 연관해서요. 사실 3월 21일 날 BTS 공연을 한 그다음 날 일요일, 그 전 주와 일주일 사이에 관람객이 60%가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월 22일 날 3만 2000명이, 경복궁에만 한정돼 있는데 그 일주일 전에 경복궁은 2만 명이었습니다. 60% 늘었고 그중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43%였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국가유산청에서는 이번에 한국에 있는 국가유산을 가지고 그 이후의 일을 더, 저희들이 지금 더 많이 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콘텐츠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지역으로 같이 유도되는 그런 것들까지 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짜고 있고 위원님 말씀 듣고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저도 정말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입법은 정말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컬처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콘텐츠산업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K-컬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고 그 부분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다 잘 포함이 돼서 새롭게 전략을 짜고 또 지방으로도 잘 확장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수 위원** 지역에서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 지정·운영이라든지 지역 인력 육성, 일자리 창출 이런 데 대한 어떻게 보면 마중물 차원의 국가 차원의 지원이 초기에 이루어지고, 그게 정착이 되면 지역 차원에서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다른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

○**이기현 위원** 존경하는 김승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관련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BTS 컴백 공연 관련해서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국감, 작년 국감에서 제가 운영위에서 국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 국감을 통해서 BTS 컴백할 때 저희 빛의 혁명의 광장이었던 광화문에서 BTS가 컴백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렸고 대통령비서실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했고, 물론 민간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문체부가 협업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희에게 이런 K-콘텐츠의 핵심인 케이팝 전용 공연장이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공약에서도 5만 석의 아레나가 공약되었지만, 물론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행되는 데는 5년 이상, 6년, 7년의 장기간 시간이 걸립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민간 단위에서 지어지고 있는 전문 공연장 그리고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공연장에 대해서 문체부가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과를 내는 일이고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현실화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5만 석이 만들어지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시간도 걸릴뿐더러…… 5만 석뿐만 아니라 2만 석짜리 공연장, 보다 더 작은 소규모 전문 공연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민간의 사업이거나 지자체의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손 놓아서 안 된다고 저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양시에 지어지고 있는 아레나도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한번 물으셨던 바 있는데 장관님께서 답을 주셨습시다라는 라이브 네이션이라고 하는 세계적 공연 전문 기업이 진행하려고 했지만 몇 가지 실무적 문제에서 진도가 빠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문체부가 그냥 그것은 경기도가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체부에서 담당 차관님, 국장님들 현장도 방문해 보시고…… 해외기업이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투자만 한다면 큰 성과를 바로 낼 수 있는데…… 이미 설계도도 다 있고 공사도 17% 이상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설계도도 인수됐고 그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무진들 파견해서 그런 사항들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만 그냥 용역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문체부가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BTS가 컴백 공연을 길에서 해야 할 수밖에 없나. 물론 역사적인 의미 때문에 저도 주장해서 했습니다만 더욱더 전문 공연장들이, 전국 단위에 서 대·중·소 공연장들이 차근차근 준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현 위원 아니, 답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공연장 부족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여러 공연장의 진행 상황은 저희가 빨리 체크해서 제반환경이 하루빨리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지금 이기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용역 들어간 것은 언제 결과가 나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교흥 그게 1년 정도 걸리나 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위원장 김교흥 그러면 기간이 꽤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지금 있는 경기장들 있잖아요. 현존하고 있는 경기장. 그 경기장들을 약간 리모델링해서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주셔 가지고요. 그런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시설들을 개보수하고 음향시설이나 조명 시설을 갖추는 작업들은 올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교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먼저 김승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합니다. 또한 이기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공연장 인프라 확충 등이 매우 시급한 사정이라는 것도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가 문체부 차원에서, 공연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문화 인력이라든지 문화 파생산업, 예를 들면 푸드, 뷰티, 패션, 웰니스까지에 대한 요청사항들 혹은 그런 상품을 접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공연장 포함 국내에 설치해야 하는 것들 또 해외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시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도 머리를 맞대고 같이 문체부랑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또 조사가 가능한 어떠한 단위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문화상품, 문화 파생상품의 수출에 관련해서는 수출기구가 반드시 문체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품하고는 다르게 콘텐츠의 영향을 받아서 트렌드를 쫓아가게 되는 문화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렌드가 변하는 것에 매우 민감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 수출하고는 굉장히 많이 구조가 다르고 그런 것들에 빠르게 대처해서 상품들을 내보내고 또 문화 인력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문화 인력까지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을 하면서 해외에 내보낼 것이냐 또 해외에 정착을 시킬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K-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세계 정상을 달리고 있지만 이게 5년 있다가 인기가 떨어질지 10년 있다가 인기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사이에 우리가 세계의 거점을 마련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탄탄히 자리를 잡아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문체부에서 마련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서 가지고 전략기구, 반드시 시책 마련할 수 있는 전략기구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말씀처럼 K-컬처는 이제는 단순히 콘텐츠산업만이 아닙니다. 콘텐츠산업 그다음에 예술산업도 있지만 그 이외에 라이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K-푸드, 뷰티, 패션 또 K-컬처를 접한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래관광객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컬처라는 산업의 정의를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정의된 K-컬처의 개념을 토대로 해서 종합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수출 전략,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도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거랑 다 복합적인 건데 지난 체육관광소위 법안 심의를 하다 보니까 대형 스포츠행사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 논의 과정에 앞으로 BTS 공연 같은 대형 문화행사가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질 텐데 과연 그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 부처와 협의를 하는데 우리 문체부가 너무 소극적인 입장에서 대화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존의 관행적인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미 K-컬처가 갖고 있는 위상이나 산업적인 부가가치가 엄청난 상황인데 마냥 끌려만 가서는 안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것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K-컬처 300조,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이라는 얘기를 거창하게 지금 문체부에서 발표하고 대통령께도 보고를 했는데 이후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드렸습시다만 지금 벌써 4월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에 관한 보도 내지는 보고를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었던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문체부가 좀 더 빨리, 빠른 속도로 기존의 도그마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창의적인 계획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런 건에 대해서 문체부에 좀 더 채근을 하시고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같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박정하 간사께서 전부터 말씀하신 대중교류문화위원회 거기가 이제

분과가 다 잡히고 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양당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보고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궁금하고.

앞으로 K-컬처 300조 시대의 인프라를 어떻게 갈 것이고 또 콘텐츠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문체위에 한번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장과 함께, 저랑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위원장이랑 같이 함께 와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하 위원님이 여러 번 K-컬처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빨리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K-컬처는 지금 중요하고 빨리 실행계획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통계라든지 몇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곧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간사님.

○임오경 위원 장관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매번 법안 심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획예산처나 타 부처 간에 의견이 좀 부딪히는, 충돌되는 사안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또 저희가 법안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타 부처에서 제안설명 좀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법안 심의를 할 때 사전에 미리 문체부에서 그러한 부분들의 의견 수렴을 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법안 심의를 하러 왔는데 계속해서 타 부처에서 밖에서 대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하셔서 타 부처 간의 의견을 잘 수렴하시고 좀 협력을 하셔서 문체부 법안이 타 상임위로 인해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왜 법안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기획예산처나, 계속해서 ‘기획예산처가 반대하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정쟁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타 부처 간에, 양 옆에 앉아 계시는 1차관님, 2차관님들도 타 부처와 의견 수렴을 좀 잘하셔서, 협력 조율 잘하셔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심려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또 다른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

○이기현 위원 유산청장님께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세요.

○이기현 위원 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이

되었고 오늘 통과가 될 텐데요. 특히 궁능유산 관련해서 보존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조해 말씀드릴 것은 서오릉 관련된 문제인데 서울 은평구 인근에 있는 서오릉에 군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방첩학교라는 부대인데요. 이번에 내란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큰 문제가 되었던 방첩사의 휘하부대이고 교육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40년 전 군사정권 시절에 서오릉 경내에 약 4만 평의 부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를 만들어서 그 이전에는, 보안사일 때는 보안학교 그다음에 기무사일 때는 기무학교 지금은 방첩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방첩학교가 서오릉라고 하는 세계문화유산 경내에서 이제는 철거되어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유산청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그 철거를 위한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방첩사가 지금 해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첩사가 3개의 기능으로…… 방첩, 수사 그리고 신원조사 이 3개의 기능으로 분화돼서 각기 다른 부대로 이제 분산이 될 텐데 이때 방첩학교가 서오릉 경내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산청장님께서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방첩사가 해체되는 이 마당에 방첩학교를 그대로 서오릉이라고 하는 세계문화유산 경내에 4만 평이라고 하는 큰 부지의 땅을 더 이상 무단점유할 수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유산청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방첩학교를 이제는 서오릉 경내에서 빼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 검토하신 내용이 있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장 허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지금 빨리 조치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방첩사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상의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권에 펼쳐져 있는 궁능에 대해서, 거기에 관계된 것도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고 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첩사에 대해서, 방첩학교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철저히 바로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여러 위원님들의……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김교흥** 김승수 위원님 있으세요?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장관님, 앞서 한류진흥법 관련해서 올해 케이팝 아레나를 위한 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이 지금 일부 반영됐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지 이런 데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공모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어쨌거나 올해 사업은 사업대로 하더라도 최소한 권역별 주요 거점도시에는 1개소 정도의 그런 공연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수요조사 좀 하시고 또 공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이런

것들까지 파악을 하셔서 가지고 27년도 예산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7항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 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7항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의결하기에 앞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부칙에 대한 부분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6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의결하기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부칙에 대한 부분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4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9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오경·박정하 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도서관법, 관광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2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체부장관의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개정안은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자료의 납본 대상 확대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도서관법 개정안은 납본 제도 관리 기반 강화와 국가 지식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한국을 방문하는 단체관광시장의 질적 도약을 담보하고 무단 이탈 발생 시 제재 수단을 갖추어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든든한 법적·제도적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의 안전 관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장님, 박정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여러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법안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민 국가유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관람료 사용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가유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을 통해서 백제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그런 고견들은 앞으로 국가유산청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31.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4분)

○위원장 김교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의 주요 내용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0개의 수감기관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각 기관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 안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10시46분)

○위원장 김교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전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요구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한 가지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했었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해서는 감사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가 감사원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유관 협단체가 2000여 개나 되고 인력·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단체들까지 다, 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단체들을 다 감사하게 된다면 너무 부담이 간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 대신에 창작자의 권리 침해 부분에 한정하여서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문체부 해당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감사하던 것을 문체부에서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 음악저작권협회 문제는 뭐냐 하면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창작자 회원들이 준 것에 대하여 신뢰를 저버리고 창작자들의 권리 자체가 무시된다는 것 또 제가 직

접 협단체 내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볼 때는 5000억 가까이 징수하는 단체에서 이미 자본 잠식이 일어났다고 그러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창작자의 보상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여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만 창작자 권리 침해 부분에 대해서 한정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자체 감사로 굉장히 강력한 감사를 하도록 할 것을 요청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 부분은 일단 여야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체부 시정명령 불이행 또 저작권료 배분 부실, 내부 직원의 외부 회사 설립 문제, 내부 감사 왜곡 등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을 이미 우리 요구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음저협에 대해서 명확한 감사를 반드시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교홍 김승수 김재원 박정하 손 솔 이기현 이소희 임오경 조은희 진종오

○출장 위원(1인)

정연욱

○청가 위원(4인)

김운덕 민형배 박수현 조계원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문화미디어산업실장 김재현
 관광정책실장 강정원
 체육국장 이선영
 정책기획관 이준호
 문화정책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이용신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관광정책관 강동진
 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체육협력관 임영아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채수희
 유산정책국장 이길배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이진식

【보고사항】

○의안 회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3.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0)

3월 24일 회부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4.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9)

3월 25일 회부됨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5.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4)

3월 26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3.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1)

3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6. 3. 24.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8)

3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